

## ●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 제2025-2호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·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3월 11일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

###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등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징계위원장 대행(안 제2조)

- 1)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위에 따라 상세하고 명확히 규정함.
- 2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의 사고, 궐위 시 징계위원장을 대행할 검사를 동일하게 규정함.

##### 나. 징계위원 및 예비위원 지명(안 제3조)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중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이 될 사람을 사전에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함.

##### 다. 제척·기피·회피 시 예비위원 참여 등(안 제7조)

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제척·기피신청·회피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관련 의결에 참여하도록 함.

##### 라. 서류 서식 및 송달, 절차 관련 규정(안 제4조, 제6조 및 제8조)

검사징계위원회 절차 진행에 사용될 서식 등을 규정함.

#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인권수사정책관실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 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실
- 전자우편 : leejh1735@korea.kr
- 팩스 : (02)6320-0238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수사정책관실[(02)6320-0256]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(<http://www.cio.go.kr>) <법령정보 - 입법·행정예고>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